가 정 통 신 문

행복한 관기
어울림 교육

홈페이지 http://school.cbe.go.kr/kwangi-e ☎ 043) 543-5093

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드릴 말씀은,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매년 **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**로 지정하고, **11월 16일(월)부터 11월 20일(금)까지를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운영**함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울러 가정이나 이웃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교육 자료를 읽어보시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1.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, 처벌

가. 아동학대의 정의

1) 아동의 나이는? 만18세 미만인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)

2)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3) 아동학대범죄란?

- ❒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
- ❒ 형법상 범죄(상해, 폭행, 유기, 학대, 체포, 강간, 강요 등)
- ❒ 복지법상 범죄(신체, 정서, 성, 방임)
- ❒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(아동학대치사, 중상해, 상습범)

나.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

1) **신체학대:**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2) **정서학대:**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
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3) **성학대:**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
→ 성희롱·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→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,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

4) **방임·유기**

가) 물리적 방임 :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,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

나) 교육적 방임 :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, 교육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

다) 의료적 방임 :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

라) 유기 :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,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

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2. 아동학대 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

언제	• 아동의 울음소리, 비명,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•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•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•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•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
무엇을	•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•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•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주소 •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※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,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
어떻게	• 국번없이 112 •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(043-731-3686) •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
2020. 11. 16.

관 기 초 등 학 교 장